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5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쟁점과 전망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5

#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쟁점과 전망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PAPER 2018-03-05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쟁점과 전망

I. 들어가며	07
II. 동물의 법적 지위	08
1.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우리 「민법」	08
2. 외국에서의 '인간 vs 물건' 이분법적 사고의 변화	09
3.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갖는 의미	17
III.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쟁점	19
1. 동물학대행위의 쟁점	19
2. 맹견의 사육과 관리	22
3. 그 밖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법적 쟁점	29
IV. 나가며 -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전망	30



# I. 들어가며

---

-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은 점점 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 동물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안에는 여전히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존재함.
- 사회에는 동물을 사랑하고, 적어도 동물에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양자 간 관계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함.
- 동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전제가 되는 사항 중 하나는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임.
- 과거에는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람 vs 물건(사람이 아닌 존재)’의 이분법적 사고로 법적 개념도 구성이 되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 vs 물건’이라는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람 vs 물건’ 외에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동물정책을 ‘사회통합’ 관점에서 다시 조망하고, 관련된 법적 쟁점과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임.

## II. 동물의 법적 지위

---

### 1.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우리 「민법」

- ‘물건’에 관한 규정은 권리 주체인 ‘사람’에 대응하는, 권리 객체로서의 ‘물건’을 정의하고 있음.
- 권리주체의 의미
  - 권리주체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음.
  -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나 책임도 없음.
  - 그런 점에서, 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상해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더라도 동물이 직접 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배상할 수 없음.
  - “동물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동물이 권리의 주체로서 의무나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하므로, 이론상 “동물권” 내지 “동물기본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임.
- 우리 「민법」은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물건을 정의함.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우리 「민법」에 따른 경우, 동물은 생명령 있는 ‘유체물’로서의 ‘물건’에 불과함.

## 2. 외국에서의 ‘인간 vs 물건’ 이분법적 사고의 변화<sup>1)</sup>

- 전통적으로 서구의 근대민법에서는 사람과 물건을 이원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있음.<sup>2)</sup>
  - 우리 민법도 여전히 사람과 물건을 이원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사람 vs 물건’의 이원 대립적 사고에 따라 동물은 전통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어 왔음.
- 이러한 전통적인 ‘사람 vs 물건’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독일 및 오스트리아 민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프랑스의 경우 동물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임을 명시하기도 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독일법률상 동물관련 규정의 변화

- 1990년, 독일 민법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주는 규정이 추가됨.

독일 「민법」 제90조a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90a Tiere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1) 이 부분은, 다음 두 개의 논문의 주된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임을 밝혀둠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8.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56), 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2)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8, 7면.

- 민법 제90조a 제1문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통하여 종래 물건 개념을 변경
- 제1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동물을 권리주체, 즉 사람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동물을 인간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결정과 책임능력을 지닌 인간과 같은 존재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sup>3)</sup>
- 민법 제90조a 규정과 관련하여, “물건 개념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것은 법 발전에 있어서 전환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호의적인 의견과, ‘동물은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으로 간주된다는 동 규정은 어떻게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미해결 그대로’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존하고 있음.<sup>4)</sup>
- 동 규정에 따라,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동물의 객체성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sup>5)</sup>
- 다만, 이 규정의 신설에 따라 동물에 관한 법적인 취급이 우선 물건법상 지배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니라, 다른 법률들, 특히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별한 존재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기도 함.<sup>6)</sup>
- 또한, 민법 제90조a 제3문 때문에, 동물이 제1문에 따라 더 이상 물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권리 주체가 아닌 권리의 객체의 범주에 속하게 됨.
- 한편,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규정했던 조항 중,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의 도입에 따라 부조화 또는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법 규정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sup>7)</sup>
- 먼저는, 동물의 치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그 중 하나임.<sup>8)</sup>

3)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56), 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409면.

4) 박정기, 앞과 동일.

5) 윤철홍, 앞의 글, 411면.

6) 윤철홍, 앞의 글, 409면.

7) 윤철홍, 앞의 글, 414면.

8) 이하, 윤철홍, 앞의 글, 415면 내용임

- 원래 독일민법은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었던 상태로 회복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하거나 물건의 훼손을 이유로 손해 배상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음.<sup>9)</sup>
- 또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에게 충분히 전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0)</sup>
- 독일 민법상 손해배상법에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것과 적절한 비용지출에 관한 배상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와 관련하여, 제251조제2항에 제2문을 신설하여, 제90조a 신설로 인한 공백을 보완함.
- 즉, “피해 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함.<sup>11)</sup>
- 기존의 손해배상 조항들에 따르면, 손해배상 의무자는 동물의 시장가액의 최고가격에 이르는 배상을 하면 되었을 뿐, 동물의 시장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치료의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한계가 항상 문제된 바 있음.
- 이 규정의 신설은, 생명의 유지가 문제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동물이 생명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는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예컨대, 도살이 예정된 유용동물 등은 생명에의

9)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249 Art und Umfang des Schadensersatzes

(1) Wer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t ist, hat den Zustand herzustellen, der bestehen würde, wenn der zum Ersatz verpflichtende Umstand nicht eingetreten wäre.

(2) Ist wegen Verletzung einer Person oder wegen Beschädigung einer Sache Schadensersatz zu leisten, so kann der Gläubiger statt der Herstellung den dazu erforderlichen Geldbetrag verlangen. Bei der Beschädigung einer Sache schließt der nach Satz 1 erforderliche Geldbetrag die Umsatzsteuer nur mit ein, wenn und soweit sie tatsächlich angefallen ist.

10)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251 Schadensersatz in Geld ohne Fristsetzung

(1) Soweit die Herstellung nicht möglich oder zur Entschädigung des Gläubigers nicht genügend ist, hat der Ersatzpflichtige den Gläubiger in Geld zu entschädigen.

11)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251 Schadensersatz in Geld ohne Fristsetzung (2) Der Ersatzpflichtige kann den Gläubiger in Geld entschädigen, wenn die Herstellung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n Aufwendungen möglich ist. Die aus der Heilbehandlung eines verletzten Tieres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nicht bereits dann unverhältnismäßig, wenn sie dessen Wert erheblich übersteigen.

기대를 가지지 않음.<sup>12)</sup>

- 당시 연방의회 법률분과위원회의 토론을 통한 최종 결정에서는, 이성적인 동물의 보유자가 가해자의 지위에서 지출해야만 했던 비용만을 배상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무제한적인 범위에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지만, 기존에 존재했던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법상의 한계는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두 번째로, 소유권 관련 조항의 변화를 들 수 있음.<sup>13)</sup>

- 원래, 독일 민법 제903조는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음.
- 그런데 여기에 제2문을 추가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특별준수의무를 신설한 바 있음.
- 즉,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의 행사시에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sup>14)</sup>
- 이 규정에 대해서, 동물보호 인식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민법전상 이례적인 규정으로 법적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적 성격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함.

● 세 번째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또 다른 변화의 하나임.<sup>15)</sup>

- 독일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중, 처분이 동물에 관련되는 때에는 집행법원이 행하는

---

12) 박정기, 앞의 글, 10면.

13) 이하, 윤철홍, 앞의 글, 416면 내용임.

14)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903 Befugnisse des Eigentümers

Der Eigentümer einer Sache kann, soweit nicht das Gesetz oder Rechte Dritter entgegenstehen, mit der Sache nach Belieben verfahren und andere von jeder Einwirkung ausschließen. Der Eigentümer eines Tieres hat bei der Ausübung seiner Befugnisse die besonderen Vorschriften zum Schutz der Tiere zu beachten.

15) 박정기, 앞의 글, 10면~11면의 내용임.

고려에 있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고려하여야 하고<sup>16)</sup>, 비영리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sup>17)</sup>을 새롭게 포함시킨 바 있음.

## (2) 프랑스 법률상 동물 관련 규정의 변화

### ● 민법전상 동물보호 규정

- 프랑스는 (LOI n° 2015-177 du 16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des procédures dans les domaines de la justice et des affaires intérieures) 제2조를 통하여 민법전 제2권 제1편 앞에 제515-14조를 신설하였음.
- 민법 제515-14조는 동물이 감성을 지닌 생명체임을 명시하였고, 동물을 재산법제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동 조문에서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동물을 사용하기 위한 물건(chose)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6) Zivilprozessordnung § 765a Vollstreckungsschutz (1) Auf Antrag des Schuldners kann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Maßnahme der Zwangsvollstreckung ganz oder teilweise aufheben, untersagen oder einstweilen einstellen, wenn die Maßnahme unter voller Würdigung des Schutzbedürfnisses des Gläubigers wegen ganz besonderer Umstände eine Härte bedeutet, die mit den guten Sitten nicht vereinbar ist. Es ist befugt, die in § 732 Abs. 2 bezeichneten Anordnungen zu erlassen. Betrifft die Maßnahme ein Tier, so hat das Vollstreckungsgericht bei der von ihm vorzunehmenden Abwägung die Verantwortung des Menschen für das Tier zu berücksichtigen. (2) Eine Maßnahme zur Erwirkung der Herausgabe von Sachen kann der Gerichtsvollzieher bis zur Entscheidung des Vollstreckungsgerichts, jedoch nicht länger als eine Woche, aufschieben, wenn ihm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Satz 1 glaubhaft gemacht werden und dem Schuldner die rechtzeitige Anrufung des Vollstreckungsgerichts nicht möglich war. (3) In Räumungssachen ist der Antrag nach Absatz 1 spätestens zwei Wochen vor dem festgesetzten Räumungstermin zu stellen, es sei denn, dass die Gründe, auf denen der Antrag beruht, erst nach diesem Zeitpunkt entstanden sind oder der Schuldner ohne sein Verschulden an einer rechtzeitigen Antragstellung gehindert war. (4) Das Vollstreckungsgericht hebt seinen Beschluss auf Antrag auf oder ändert ihn, wenn dies mit Rücksicht auf eine Änderung der Sachlage geboten ist. (5) Die Aufhebung von Vollstreckungsmaßregeln erfolg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und des Absatzes 4 erst nach Rechtskraft des Beschlusses.

17) Zivilprozessordnung § 811c Unpfändbarkeit von Haustieren (1)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sind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2) Auf Antrag des Gläubigers lässt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Pfändung wegen des hohen Wertes des Tieres zu, wenn die Unpfändbarkeit für den Gläubiger eine Härte bedeuten würde, die auch unter Würdigung der Belange des Tierschutzes und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s Schuldners nicht zu rechtfertigen ist.

- 민법 제515-14조의 적용범위는 동물의 종류는 가리지 않으나, 야생동물(animaux sauvages)은 제외하고 재산의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동물에 한정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함.<sup>18)</sup>

프랑스 [민법 제515-14조]

- Les animaux sont des êtres vivants doués de sensibilité. Sous réserve des lois qui les protègent, les animaux sont soumis au régime des biens.
- 동물은 감성을 지닌 생명체이다.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의 유보 하에 동물은 재산법제에 따른다.

● 형법전상 동물 관련 규정

- 1994년부터 시행된 프랑스 신형법전에서는 동물학대죄(Des sévices graves ou actes de cruauté envers les animaux)의 편제를 종래에는 ‘재산에 대한 죄’에서 규정하였으나, 현형법전은 ‘재산에 대한 죄’에서 분리하여 ‘사람에 대한 죄(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재산에 대한 죄(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biens)’, ‘국가·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a nation, l'Etat et la paix publique)’, ‘전쟁에 관한 죄(Des crimes et des délits de guerre)’와 나란히 ‘기타 중죄 및 경죄(Des autres crimes et délits)’라는 표제 하에 동물학대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로써 프랑스 입법자가 동물을 다른 유체재산과 구별하여 생명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8) J. Glavany, JOAN CR, 3e séance, 15 avril 2014, p. 2605.

프랑스 형법전

법률부문

- 제1권: 총칙(Liv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 제2권: 사람에 대한 죄(Livre II :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제3권: 재산에 대한 죄(Livre III :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biens)
- 제4권: 국가·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Livre IV :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a nation, l'Etat et la paix publique)
- 제4권2: 전쟁에 관한 죄(Livre IV bis : Des crimes et des délits de guerre)
- 제5권: 기타 중죄 및 경죄(Livre V : Des autres crimes et délits)
  - 제1편: 공중보건 분야 법률위반(Titre Ier :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santé publique)
  - 제2편: 기타 규정
- 제1장: 동물에 대한 중대한 학대 또는 잔인한 행위(Chapitre unique : Des sévices graves ou actes de cruauté envers les animaux)
  - 제521-1조: 동물에 대한 중대학대·잔인한 행위
  - 제521-2조: 위법 동물실험죄

### (3) 오스트리아 법률상 동물 관련 규정의 변화

- 오스트리아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민법전에 신설한 국가임.<sup>19)</sup>
  - 오스트리아 국회는 1988년 3월 10일,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Bundesgesetz ueber die Rechtsstellung von Tieren)을 의결
  - 오스트리아 민법 제285조a와 제1332조a 두 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개정법률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sup>20)</sup>

19) 윤철홍, 앞의 글, 401면.

20) [http://www.ris.bka.gv.at/Dokumente/BgblPdf/1988\\_179\\_0/1988\\_179\\_0.pdf](http://www.ris.bka.gv.at/Dokumente/BgblPdf/1988_179_0/1988_179_0.pdf)

● 오스트리아 민법 제285조a

오스트리아 「민법」 제285조a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한다.

§ 285a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 이 규정은 2분화 되어 있던 ‘인간 vs 물건’의 관계가 ‘인간과 동물, 물건’이라는 3분화된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 이 규정의 신설 당시, “동물은 생명이 없는 대상들처럼 일반 규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소유권은 동물에 대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sup>21)</sup>

● 오스트리아 민법 제1332조a

오스트리아 「민법」 제1332조a

동물이 상해를 당한 경우에, 만약 그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한 때에는, 이성적인 동물보유자가 가해자의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한 범위 내에서, 사실상 지불된 치료의 비용 혹은 치료가 시도된 비용은 보장된다.

§ 1332a

Wird ein Tier verletzt, so gebühren die tatsächlich aufgewendeten Kosten der Heilung oder der versuchten Heilung auch dann, wenn sie den Wert des Tieres übersteigen, soweit auch ein verständiger Tierhalter in der Lage des Geschädigten diese Kosten aufgewendet hätte.

- 오스트리아 민법 제1332조a는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적용됨.<sup>22)</sup>

21) 윤철홍, 앞의 글, 403면.

22) 이하, 윤철홍, 앞의 글, 406면의 내용임.

-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도와 달리, 동물의 경우에는 지급된 모든 비용들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개정시안의 문언에 따르면, 치료의 예측이 처음부터 아주 불리한 것일 경우, 가해자는 지나친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민법의 법적인 효과는 모든 동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의 종류에 따라, 소유자에게 대체할 수 없는, 이를 떼면 반려동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음. 이러한 제한을 가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은 계속해서 물건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지만, 동물에 대해 특별한 감정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만 특별 취급 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함.
- 이런 특별한 경우만을 위해 입법화된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의 객체와 주체에 대한 기준이 혼란스럽고, 특별한 감정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결국 현행의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입법되었으며, 이는 독일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음.

### 3.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갖는 의미

- 법적 지위는 “보호 ⇒ 복지 ⇒ 권리”의 대상의 순서로 발전하게 됨.
- 현재 우리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보호의 대상과 복지의 대상’ 사이에 있음.
- 「동물보호법」 및 기타 법률에서 ‘동물학대’를 규정하는 것은 동물을 생명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
- 이는 단순히 보호의 대상을 넘어 복지의 대상으로도 보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모든 법률에서 일관성 있게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 예컨대, 생명 없는 물건에 대한 부당행위는 “물건에 대한 손괴”에 해당함.

- 「형법」에서는 별도의 동물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형법상 동물학대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
- 만약, 「민법」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됨.

## III.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쟁점

### 1. 동물학대행위의 쟁점

#### (1) 동물의 법적 지위에 따른 평가의 차이

-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함.<sup>23)</sup>
- 국내법상 「형법」이나 「민법」에 따른 경우, 동물에 대한 살상 또는 학대행위는 “물건”의 가치를 손상하는 ‘재물손괴’에 해당
- 이 경우도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손상되는 물건 자체에 대한 보호보다는 해당 ‘재물의 권리자’를 보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동물보호법」에 따른 경우 동물학대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동물 자체”에 대한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음.
- 「형법」에 따른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존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타인이 아닌,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내 물건은 내 뜻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 방식이 전제
  -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행사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

23)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동물이 생명이 있고, 감정과 지각이 있는 존재라는 점을 배제하고 동물을 단순한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자기 소유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손상시키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음.

## (2) 학대행위의 문제점

- 동물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행위까지 포함하여 행위의 객체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기본적으로 학대행위의 객체는 가해자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존재임.
-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남.

법률	가해자	학대행위 객체		
동물보호법	모든 사람 (누구든지)	동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동물	가해자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존재라는 공통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모든 사람 (누구든지)	야생동물: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근무하는 자	보유동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가축		
형법	모든 사람 (누구든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사람: 사회적 약자 계층	
아동복지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아동		
노인복지법	모든 사람 (누구든지)	노인		
장애인복지법	모든 사람 (누구든지)	장애인		
청소년보호법	모든 사람 (누구든지)	청소년		

- 상대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폭행은 그 자체로 “폭행죄”를 구성
- 그렇지만, 학대행위의 객체에 대한 폭행은 “학대행위”를 구성함.
- 그런 점에서 “학대”는 “약한 존재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행위”로 정의해 볼 수 있음.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동물학대행위는 단순히 물건과 유사한 재물(동물)에 대한 손괴가 아니라, 약한 존재에게 가해지는 부당행위라는 점에서 동물학대행위가 다른 약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있음.
- 생명 및 감정이 있는 존재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 (3)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논의

- 동물학대행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서 다른 약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문제됨에 따라 동물학대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짐.
- 그러나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의 법정형을 넘어서기 어려움.
  - 특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법정형(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고려사항에서 제외할 경우,
  - 현행 「형법」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해 규정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음.

## 2. 맹견의 사육과 관리

### (1) 맹견의 사육으로 인한 사회 갈등

- 일전에 유명 연예인의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고 사람을 물었고, 물린 사람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
- 이후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들의 펫티켓 문제를 비롯하여, 입마개 사용 및 처벌 확대, 안락사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음.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의견대립, 맹견의 관리·훈련에 대한 고민 없는 통제 여론 등은 새로운 사회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맹견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이, 개물림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현재에 와서야 논의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관련 규정들이 발효됨.
-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구호와 달리, 아직 우리 사회에서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보임.

### (2) 맹견의 사육 등에 관한 법제

- 우리의 경우,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02호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의 정의를 규정하고,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행해졌음.
-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맹견의 관리, 맹견의 출입금지 등의 사항은 2019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또한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맹견 소유자 등이 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sup>24)</sup>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개사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특별히 맹견의 사육과 관련한 사항들을 법령에서 체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임.
  - 독일의 경우, 주별로 '개사육법' 및 별도의 '위험한 개에 대한 시행령' 등을 규정
  - 연방법인 「동물보호법」 외에,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주에 따라서는 맹견으로 분류된 경우, 면허제를 도입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맹견을 사육,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24) 「동물보호법」(법률 제15502호) 제4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2

● 일부 규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sup>25)</sup>

- 독일 니더작센주의 개사육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독일 니더작센 주 개사육에 관한 법률  
2002년 12월 12일 개사육에 관한 니더작센 법률

제2조(일반의무) 개는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 지도되어야 한다.

제3조(면허의무)

-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험한 개를 사육하는 자는 면허를 요한다.
- (2) 2001년 4월 12일자 개의 이송 및 수입제한법(BGBI, IS, 530)제2조제1항제1문에 명시된 개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 (3) 행정청은 다른 종이나 다른 유형의 개가 높은 공격성을 보였거나, 특히 사람이나 동물을 물었거나 기타 자연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투쟁성, 공격성이나 날카로움을 드러낸 것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그러한 정황을 검증해야 한다. 검증을 통해 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의심을 정당화할만한 사실이 제시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개를 위험하다고 확정한다. 이러한 확정에 대한 항변과 소송은 유예효과를 갖지 않는다.
- (4) 동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수여된 면허로 동물보호소나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요하지 않는다. 공법인의 경우, 공법인이 보유한 업무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5) 니더작센 신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 주거지 없이 2개월 이상 중단없이 니더작센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요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른 위험한 개는 탈출이 불가능한 토지 외부에 줄로 매어져야 한다.

제5조(면허의 요건과 내용)

- (1) 면허는
  - ① 개의 사육자가 18세 이상이고, 위험한 개의 사육에 필요한 신뢰성(제6조), 인적 적합성(제7조), 전문 지식(제8조)을 갖추고, ② 특성테스트(제9조)를 통해 사회에 적합한 태도를 갖는 개의 능력이 입증되고, ③ 개가 변함없이 동일성이 담보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며, ④ 개가 야기하는 손해의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의 체결이 입증된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
- (2) 개의 사육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은 개의 보호를 책임지는 자가 충족해야 한다.
- (3) -(5) (생략)

제10조(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인적 손해에 대하여 500,000유로, 그리고 물적 손해와 기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250000 유로의 최소보험금으로 체결, 유지될 수 있다. 보험계약법 제158조c 조제2항제1문에 따른 관할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다.

25) 독일의 개사육 관련 법제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구체화하고자 함.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간략한 내용만을 소개함.

Niedersächsisches Gesetz über das Halten von Hunden (NHundG) Vom 12. Dezember 2002 (Nds. GVBl. 2003 S. 2 – VORIS 21011 –)

### § 2 Allgemeine Pflichten

Hunde sind so zu halten und zu führen, dass von ihnen kein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en.

### § 3 Erlaubnispflicht

(1) Wer einen nach Maßgabe der Absätze 2 und 3 gefährlichen Hund hält, bedarf der Erlaubnis.

(2) Als gefährlich gelten die in § 2 Abs. 1 Satz 1 des Hundeverbringungs- und -einfuhrbeschränkungsgesetzes vom 12. April 2001 (BGBl. I S. 530) genannten Hunde.

(3) 1 Erhält die Behörde einen Hinweis darauf, dass ein Hund einer anderen Rasse oder eines anderen Typs eine gesteigerte Aggressivität aufweist, insbesondere Menschen oder Tiere gebissen oder sonst eine über das natürliche Maß hinausgehende Kampfbereitschaft, Angriffslust oder Schärfe gezeigt hat, so hat sie den Hinweis von Amts wegen zu prüfen. Ergibt die Prüfung Tatsachen, die den Verdacht rechtfertigen, dass von dem Hund ein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t, so stellt die Behörde fest, dass der Hund gefährlich ist. Widerspruch und Klage gegen diese Feststellung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4) Personen, die mit einer nach § 11 des Tierschutzgesetzes erteilten Erlaubnis ein Tierheim oder eine ähnliche Einrichtung betreiben, bedürfen keiner Erlaubnis nach Absatz 1. Gleiches gilt für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für die von ihnen gehaltenen Diensthunde.

(5) Einer Erlaubnis nach Absatz 1 bedarf ferner nicht, wer in Niedersachsen keine Hauptwohnung im Sinne des § 8 Abs. 1 des Niedersächsischen Meldegesetzes (NMG) hat und sich nicht länger als zwei Monate ununterbrochen in Niedersachsen aufhält. Ein gefährlicher Hund nach Absatz 2 ist außerhalb ausbruchssicherer Grundstücke anzuleinen.

### § 5 Voraussetzungen und Inhalt der Erlaubnis

(1) Die Erlaubnis ist nur zu erteilen, wenn 1. die Hundehalterin oder der Hundehalter das 18. Lebensjahr vollendet hat und die zum Halten des gefährlichen Hundes erforderliche Zuverlässigkeit (§ 6), persönliche Eignung (§ 7) und Sachkunde (§ 8) besitzt,

2. die Fähigkeit des Hundes zu sozialverträglichem Verhalten durch einen Wesenstest (§ 9) nachgewiesen ist,

3. der Hund unveränderlich so gekennzeichnet ist, dass seine Identifizierung gewährleistet ist, und

4. der Abschluss einer Haftpflichtversicherung zur Deckung der durch den Hund verursachten Schäden (§ 10) nachgewiesen ist.

(2) Ist die Hundehalterin oder der Hundehalter eine juristische Person, so sind die Anforderungen des Absatzes 1 Nr. 1 durch die für die Betreuung des Hundes verantwortliche Person zu erfüllen.

(3) Die Hundehalterin oder der Hundehalter hat der Behörde innerhalb von drei Monaten die Unterlagen vorzulegen, die erforderlich sind, um das Vorliegen der Erlaubnisvoraussetzungen zu prüfen. Die Frist kann auf Antrag um höchstens drei Monate verlängert werden. Nach Ablauf der Frist ist die Erlaubnis zu versagen.

(4) Die Erlaubnis kann befristet und unter Vorbehalt des Widerrufs erteilt sowie mit Bedingungen und Auflagen verbunden werden. Auflagen können auch nachträglich aufgenommen, geändert oder ergänzt werden.

(5) Widerspruch und Klage gegen die Versagung der Erlaubnis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 10 Haftpflichtversicherung

Die Haftpflichtversicherung ist mit einer Mindestversicherungssumme in Höhe von 500 000 Euro für Personenschäden und in Höhe von 250 000 Euro für Sachschäden und sonstige Vermögensschäden abzuschließen und aufrechtzuerhalten. Zuständige Stelle nach § 158 c Abs. 2 Satz 1 des Gesetzes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 ist die nach § 15 zuständige Behörde.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행정명령<sup>26)</sup>을 통해 투견 등을 규정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개는 위험한 개로 간주하며, 투견 사육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 무는 버릇이 있는 개
  -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뛰어오르거나,
  - 사냥감, 짐승이나 다른 동물을 통제불가능하게 몰아대거나 잡아 뜯는 성향을 가진 개
- 브란덴부르크의 '개의 사육과 지도에 관한 행정명령'<sup>27)</sup>에서도 위험한 개의 사육에 대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고, 개의 지도·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6) POLIZEIERVERORDNUNG des Innenministeriums und des Ministeriums Ländlicher Raum über das Halten gefährlicher Hunde vom 3. August 2000

2000년 8월 3일자 내무부와 위험한 개의 사육에 관한 농촌지역부 경찰시행령

27) Ordnungsbehördliche Verordnung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Hundehalterverordnung - HundehV) Vom 25. Juli 2000

제2조(개의 지도)

(1) 둘러싸인 소유물 외부에서 개를 지도하는 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언제든지 사람, 동물 또는 사물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개를 사육하는 자는 개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안전하게 지도해야 한다. 18세 이상이며, 제12조에 따른 신뢰성을 충족하고, 지도할 위험한 개 및 다른 위험한 개에 관하여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전문지식의 증명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위험한 개를 지도할 수 있다.

(2) 한 사람은 동시에 3마리 이상의 개를 지도할 수 없다.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는 한 마리만을 지도할 수 있다. 위험한 개는 한 마리 이상의 다른 개와 동시에 지도되어서는 안 된다.

(3) 개는 둘러싸인 소유물 외부에서 개사육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는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사육되는 위험한 개는 그 외에도 목걸이에 마크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착용해야 한다. 이 마크는 붉은 색의 둥근 모양이고, 주의 문장과 송고하게 각인된 문체를 보여주며, 지름이 40밀리미터이다. (중략)

(4) - (5) (생략)

(6) 개 사육자는 개가 평화로운 소유물 외부에서 감독을 받으며 머무른다는 점을 보증해야 한다. 개는 이 명령의 규정이 준수된다는 점을 보증하는 자에게만 양도되어야 한다.

§ 2 Führen von Hunden

(1) Wer Hunde außerhalb des befriedeten Besitztums führt, muss körperlich und geistig die Gewähr dafür bieten, jederzeit den Hund so beaufsichtigen zu können, dass Menschen, Tiere oder Sachen nicht gefährdet werden. Der Hundeführer hat den Hund ständig zu beaufsichtigen und sicher zu führen. Gefährliche Hunde dürfen nur von Personen geführt werden, die das 18. Lebensjahr vollendet haben, die erforderliche Zuverlässigkeit nach § 12 besitzen und den Nachweis der erforderlichen Sachkunde nach § 11 für den zu führenden gefährlichen Hund oder einen anderen gefährlichen Hund erbracht haben.

(2) Eine Person darf nicht mehr als drei Hunde gleichzeitig führen. Wer das 18. Lebensjahr noch nicht vollendet hat, darf nur einen Hund führen. Ein gefährlicher Hund darf nicht gleichzeitig mit einem oder mehreren anderen Hunden geführt werden.

(3) Außerhalb des befriedeten Besitztums müssen Hunde ein Halsband mit Namen und Adresse des Hundehalters tragen. Gefährliche Hunde, die im Land Brandenburg gehalten werden, haben darüber hinaus am Halsband eine Plakette deutlich sichtbar zu tragen. Diese Plakette ist rot, kreisrund, zeigt das Landeswappen und die Schrift erhaben in Prägung und hat einen Durchmesser von 40 Millimetern. Hunde im Sinne des § 8 Abs. 3, für die ein Negativzeugnis erteilt wurde, haben ebenfalls eine Plakette deutlich sichtbar am Halsband zu tragen. Diese Plakette ist grün, kreisrund, zeigt das Landeswappen und die Schrift erhaben in Prägung und hat einen Durchmesser von 40 Millimetern.

(4) Der Führer eines gefährlichen Hundes hat die Erlaubnis nach § 10 außerhalb des befriedeten Besitztums mitzuführen und auf Verlangen den zuständigen Behörden auszuhändigen. Der Führer eines Hundes im Sinne des § 8 Abs. 3 hat außerhalb des befriedeten Besitztums das Negativzeugnis mitzuführen und auf Verlangen den zuständigen Behörden auszuhändigen.

(5) Gefährliche Hunde, die außerhalb des Landes Brandenburg gehalten werden, haben im Land Brandenburg am Halsband neben dem Namen und der Adresse des Hundehalters eine nach Absatz 3 Satz 2 und 4 entsprechende Plakette zu tragen, soweit nach den dortigen Vorschriften eine solche Kennzeichnung vorgeschrieben ist.

(6) Der Hundehalter hat sicherzustellen, dass sich der Hund nicht unbeaufsichtigt außerhalb des befriedeten Besitztums aufhält. Hunde dürfen nur Personen überlassen werden, die die Gewähr dafür bieten, dass die Vorschriften dieser Verordnung eingehalten werden.

- 독일에서 주별로 개사육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유사함.
  - 주별로 특이점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음.
  - 공통적으로는, 사육이 금지되는 투견을 규정하고, 투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개로 간주될 수 있는 개의 특징을 예시하고 있으며, 위험한 개의 사육에 있어서는 면허를 요구하고, 공공 장소 등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입마개 및 목줄 착용의무를 두고 있음.
  - 독일에서 위험한 개의 사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위험한 개를 비롯한 반려견 사육에 대하여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 개를 사육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격을 갖춘 후에 사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육인부터 전문지식을 갖추고 훈련을 받도록 하여 '사육인 vs 비사육인', '사람 vs 동물(개)' 간의 질서를 갖추도록 함.

### 3. 그 밖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법적 쟁점

-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음.
  -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반려’의 대상이 된 동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예컨대, 반려견 학교, 애견 유치원, 애견호텔, 애견 카페, 미용실, 심지어 스파 등의 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는 부분까지 산업이 형성되어 있음.
-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제들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산업에 대한 규제와의 형평성이 문제되기도 함.
  - 일명, ‘펫택시’의 도입으로 여객운송사업자와 동물운송업자 간 대립이 있음. 운송업자의 업무 영역이 법으로 특별히 보호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새롭게 도입된 동물운송업이 기존의 운송사업 체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
  - 반려견 학교, 애견유치원 등은 기존의 사람에 대한 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반려동물 사이에서도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고(일부 계층의 사람들 보다 더 화려한 생활을 하는 동물이 있는 반면, 학대당하며 일반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동물도 많음), 특정 계층의 반려동물이 ‘사회적 약자 층에 속한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현상은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있음.

## IV. 나가며 -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전망

---

- 동물정책은 여러 부류의 동물을 포괄하므로, 상당히 광범위할 수밖에 없음.
  -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사육인 vs 비사육인’, ‘동물에 호의적인 사람 vs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 간 갈등도 문제됨.
  - 실험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을 활용한 생체실험의 불가피성 vs 생명윤리’가 대립
  -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처우 vs 농장주의 권리 등’이 대립
  -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야생동물의 생존, 환경의 보호 등이 함께 문제됨.
- 다양한 범위의 동물정책을 모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동물정책들이 상반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여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갈등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도 함.
- 대립되는 이해관계 중, 명백히 우위에 있는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동물학대 금지, 실험동물 관련 사항 등)은 당연히 법에서 보호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열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대립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
  - 대표적인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개’의 사육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함.
  - 동물을 ‘반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도 어색한 일이 아님.
  - 동물의 비사육자와 사육자 간의 배려와 책임이 필요한 시기임.

- 우리의 경우 독일 연방 기본법에서처럼 동물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국가적 책무이기도 함.
  - 그렇지만 각 개인의 ‘반려’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동물에 대해서는 ‘반려인’들의 의무와 책임이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함.
  
-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사항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아님.
  - 배려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반려인들이 먼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임.
  - 반려동물의 등록과 유기에 따른 책임도 반려인들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함.
  - 반려동물 사육인(반려인)과 비사육인(나아가 동물 혐오자) 모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임.
  -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의무부담에 관한 법제적 사항들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세금 등의 부과, 수수료 등의 납부 등
  
-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 배려와 의무·책임이 인정되어야 함.
  - ‘사람 vs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 vs 동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
  -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배려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동물정책 관련 법제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함.

## 참고문헌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8.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56), 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http://www.ris.bka.gv.at/Dokumente/BgblPdf/1988\\_179\\_0/1988\\_179\\_0.pdf](http://www.ris.bka.gv.at/Dokumente/BgblPdf/1988_179_0/1988_179_0.pdf)

Niedersächsisches Gesetz über das Halten von Hunden (NHundG) Vom 12. Dezember 2002  
(Nds. GVBl. 2003 S. 2 – VORIS 21011 –)

POLIZEIVERORDNUNG des Innenministeriums und des Ministeriums Ländlicher Raum über das  
Halten gefährlicher Hunde vom 3. August 2000

Ordnungsbehördliche Verordnung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Hundehalterverordnung - HundehV) Vom 25. Juli 2000

「동물보호법」 법률 제1550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일부 2019. 3. 21. 시행)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5

---

##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쟁점과 전망

---

발행일 2018년 11월 16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861-0300 [www.klri.re.kr](http://www.klri.re.kr)